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안

충청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966
----------	-----

2022. 1. 26.(수)
정책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이상욱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 2022년 1월 10일

다. 회부일자 : 2022년 1월 11일

라. 상정일자 : 2022년 1월 21일

- 제39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이숙애 의원)

가. 제안사유

- 한의약은 오랜 기간 국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지키는 우리민족 고유의 의학(醫學)으로, 특히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용 증가와 사전적 예방의학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는 전통의학 및 대체의학 수요가 증가하고, 관련 시장 역시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법」,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국민 건강증진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한의학 육성법」에 따라 한의학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해야 함.
- 이에 충청북도의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한의학 육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한의학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고령화 사회 대응 및 도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제3조)
- 한의학기술의 과학화·정보화 촉진, 한의학 육성의 기본방향, 한의학 육성 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제7조)
- 한의학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제9조)

3. 검토보고 요지 (이덕항 수석전문위원)

가. 제출배경

○ (한의학 산업 동향)

- 현재 세계 의료시장은 사후적 치료에서 예방의학 중심의 개인 맞춤형 통합의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인구고령화로 인한 의료비를 절감하고 보완대체의약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전 세계 보완대체의학(Alternative Medicine) 시장은 2015년 403억2000만 달러에서 2025년 1,968억 달러로 성장이 예상되며,
- 우리나라도 2013년부터 한의학 해외환자 유치 및 해외진출 사업을 본격 시작한 이래 한의학 분야 외국인 환자는 '13년 9,554명에서 '19년 23,723명으로 2.5배 정도 성장함.³⁾

- 또한, 국내 한의약산업 종사자수 및 매출액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국내 한의약산업 현황>

	2013	2015	2017	2019
종사자수(명)	98,358	106,481	108,746	115,375
매출액	8조266억원	8조2,044억원	9조4,282억원	10조3,630억원

※ 자료: 한국한의학연구원, 2020년 한의약산업실태조사 통계집('19년 기준), 2020.12.

○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의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한의약 육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한의약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고령화 사회 대응 및 도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한의약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됨.

※ 현재 6개 광역시·도(부산, 인천, 대구, 대전, 울산, 경기)에서 한의약 육성 조례를 제정·시행중임.

<타 시·도 한의약 육성 관련 조례 제정 현황>

시·도	조례명	소관부서	제/개정일
경기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보건건강국 보건의료과	2019-07-16
대구	대구광역시 한의약 육성에 관한 조례	혁신성장국 의료산업기반과	2019-10-30
대전	대전광역시 한의약 육성 조례	보건복지국 감염병관리과	2020-07-03
부산	부산광역시 한의약 육성 조례	복지건강국 보건위생과	2020-01-01
울산	울산광역시 한의약 육성 조례	시민건강국 식의약안전과	2020-09-24
인천	인천광역시 한의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건강체육과 보건의료정책과	2020-07-14

3)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0외국인환자 유치실적 통계분석보고서”, 2021. 2. 23쪽

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를 내림.
 - 용어 정의는 「한의학 육성법」 제2조에 규정된 내용을 옮긴 것으로 문제가 없음.
 - ※ “한의학(韓醫藥)”은 전통 한의학(韓醫學)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한의사 고유영역)와 한약(韓藥)의 생산, 가공, 제조, 수입, 판매, 감정, 보관 및 그 밖에 한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포괄하는 개념임.
-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한의학 기술의 과학화·정보화 촉진, 한의학 육성의 기본방향, 한의학 육성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 안 제4조(한의학기술의 과학화·정보화 촉진 등)는 「한의학 육성법」 제4조에 따른 것으로, 서양의학에 대한 상대적 의존도가 높은 현실을 고려하여 한의학적 치료나 약제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과학적 근거의 제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필요한 내용으로 판단됨.
 - 안 제5조(한의학 육성의 기본방향)는 「한의학 육성법」 제5조의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법령의 범위에서 지역에 필요한 사업 추진을 위한 규정으로 문제가 없음.

<한의학 육성법과 충청북도 조례안의 비교 (한의학 육성의 기본방향)>

한의학 육성법	충청북도 조례안
1. 한의학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1. 한의학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2. 한의학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	2. 한의학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
3. 한의학기술의 정보화	3. 한의학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 협력의 촉진
4. 한의학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국제 기준 규격화	4. 한약시장의 지원·육성
5. 한약제의 안정적 생산 기반 조성	5.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6. 한의학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 협력의 촉진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7. 한약시장의 지원·육성	

- 안 제6조 및 제7조는 충청북도 한의약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및 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시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 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문제가 없음.
-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사무 위탁 및 보조금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 안 제8조는 제5조(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에 따라 요구되어지는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학계,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 간의 협력 촉진, 관련 시책 개발을 위한 연구 등에 관한 내용을 명시함.
 - 안 제9조는 이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한의약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사무의 위탁을 필요로 하는 대상사업이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이므로 문제가 없음.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의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한의약 육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한의약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고령화 사회 대응 및 도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 내용적으로 타당하며, 조례안 예고 및 집행부 협의를 거쳐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없음.
- 한의약은 질병예방 및 치료 측면에서 효과성이 인정받고는 있지만, 양방의료시설의 보급 확대, 양방제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편한 복용 방법, 일부 수입한약재의 안전성 문제, 과학적 검증의 미진 등으로 발전 속도가 더딘 상태임. 향후 중앙정부를 비롯한 관계 기관과의 과학화, 정보화 촉진을 위한 전략적 제휴와 시책 개발이 요구되어지며, 도민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해 한의약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책 수립·추진이 요구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안」

충청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안

(이상욱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66
----------	-----

발의연월일 : 2022년 1월 10일
발 의 자 : 이상욱, 박형용, 이숙애
이의영, 장선배, 허창원
연철흙

1. 제안이유

- 가. 한의약은 오랜 기간 국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지키는 우리민족 고유의 의학(醫學)으로, 특히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용 증가와 사전적 예방의학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는 전통의약 및 대체의학 수요가 증가하고, 관련 시장 역시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법」,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국민건강 증진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한의약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해야 함.
- 다. 이에 충청북도의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한의약 육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한의약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고령화 사회 대응 및 도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제3조)
- 나.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 촉진,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한의약 육성 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제7조)
- 다.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제9조)

3. 의안전문 :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 나. 조례안예고 : 2022. 1. 11. ~ 2022. 1. 16
- 다. 협의 :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
- 라. 비용추계 : 첨부제외 사유서

충청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충청북도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한의약”이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韓醫學)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이하 “한방의료”라 한다) 및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
2. “한약사”란 한약의 생산(한약재(韓藥材) 재배를 포함한다)·가공·제조·조제·수입·판매·감정·보관 또는 그 밖에 한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3. “한의약기술”이란 한의약을 포함하여 한약제제(韓藥製劑, 한약을 한방 원리에 따라 제조한 것을 말한다. 이하 제5호에서 같다) 및 한약재 재배(우수 품종 개발을 포함한다)·제조·유통·보관 등 한의약과 관련한 모든 상품 및 서비스에 관련된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한약”이란 동물·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서 주로 원형대로 건조·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生藥)을 말한다.
5. “한약재”란 한약 또는 한약제제를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원료 약재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한의약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한의약 육성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 촉진 등) ① 도지사는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한의약기술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 개발 및 집행 과정에 민간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한의약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고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1.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2.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
3.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 협력의 촉진
4. 한약시장의 지원·육성
5.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한의약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도지사는 「한의약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제8조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충청북도 한의약 육성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의약 육성·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2. 한의약 연구의 기반 조성에 관한 지원제도
3. 한의약 분야의 국제협력 촉진
4.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5. 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③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담당 실·국 소속으로 한의약정책 전담부서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계획 수립의 협조) 도지사는 주요 시책의 추진 방안 및 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 ① 도지사는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 간의 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 개발 연구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연구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사무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한의약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보조금 등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16조에 따라 충청북도 한의약 육성 계획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건강생활의 지원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9조(건강증진사업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요원 및 시설을 확보하고, 그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건강 관련 물품이나 건강 관련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각종 국민건강 위해 요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7조(공공·민간 보건의료기관의 역할 분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과 민간보건의료기관 간의 역할 분담과 상호협력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

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등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49조(한방의료의 육성·발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방의료(韓方醫療)를 육성·발전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의약”이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韓醫學)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이하 “한방의료”라 한다) 및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

2. “한약사”란 한약의 생산[한약재(韓藥材) 재배를 포함한다]·가공·제조·조제·수입·판매·감정·보관 또는 그 밖에 한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3. “한의약기술”이란 한의약을 포함하여 한약제제(韓藥製劑, 한약을 한방 원리에 따라 제조한 것을 말한다. 이하 제5호에서 같다) 및 한약재 재배(우수 품종 개발을 포함한다)·제조·유통·보관 등 한의약과 관련한 모든 상품 및 서비스에 관련된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한약”이란 동물·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서 주로 원형대로 건조·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生藥)을 말한다.

5. “한약재”란 한약 또는 한약제제를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원료 약재를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한의약기술의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한의약기술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 촉진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의약기술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 개발 및 집행 과정에 민간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한의약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고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1.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2.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
3. 한의약기술의 정보화
4. 한의약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국제기준 규격화
5. 한약재의 안정적 생산 기반 조성
6.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 협력의 촉진
7. 한약시장의 지원·육성

제8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지역계획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계획수립의 협조)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 소관 주요 시책의 추진 방안 및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한의약 연구·개발 사업의 추진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보건의료산업기술의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한의약기술 및 한의약 관련 제품의 보건의료산업화와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의약 연구 및 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공동 연구 및 협동 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방의료 및 한의약 관련 제품에 관한 임상시험 및 검정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연구·개발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그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6조(비용의 보조 등)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역계획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 한의약 육성법 시행령 제2조 별표

제2조(한의약 기술) 한의약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한의약기술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 한의약 육성법 시행령 [별 표]

한의약기술의 범위(제2조 관련)	
1. 한방의료관련 기술 가. 한방의료 기술 (1) 한방의료 기초기본기술 (2) 한방의료 예방 및 건강증진기술 (3) 한방의료 진단기술 (4) 한방의료 치료기술 (5) 한방의료 재활기술 나. 한방 의료기기 제품화기술 (1) 한방 진단기기 개발기술 (2) 한방 검사기기 개발기술 (3) 한방 치료기기 개발기술 (4) 한방 정보시스템 구축기술 다. 한방공공보건기술 (1) 한방의료기준 표준화 (2) 한의학 및 서양의학 공동치료기술 라. 그 밖에 한방의료관련 기술	2. 한약관련 기술 가. 한약재의 품질관리기술 (1) 품종개발기술 (2) 생산(재배)기술 (3) 가공·제조·포장기술 (4) 보관·유통기술 (5) 감별·관리기술 나. 한약제제 개발기술 (1) 한약제제 제조기술 (2) 한방신약 개발기술 (3) 임상시험 기술 다. 고전문헌 및 경험에 의한 한약관련 기술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 첨부제외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제4항제1호
“1.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첨부제외 사유

- 안 제6조(한의약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등)는 담당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전제하여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 안 제8조(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 안 제9조(사무위탁은 시책 개발연구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비용을 보조할 수 있고,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위탁 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어 재정수반요인이 있음
- 다만 조례 상 필요한 비용 지원의 근거가 권고 형식의 임의규정으로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지원 기준이 모호한 바,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